





## <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부착 의무사항 안내>

인증을 받은 모든 기기는 “전파법” 및 “전기통신기본법”에 따라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.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“전파법 제90조” 및 “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”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오니, 자세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증표시 부착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